

공고 번호 제 호

동물보호 공고문

「동물보호법」 제4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구조된 동물의 보호상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1. 동물의 정보

동물종류		보호동물사진 (5X6cm)
품종		
털색		
성별	암 / 수 / 미상	
중성화 여부	예 / 아니요 / 미상	
추정 월령/체중		
그 밖의 특징		

2. 구조 정보

구조일	
구조사유	
구조장소	
공고기간	

3. 동물보호센터 안내

관할 보호센터명		대표자	
주소			
전화번호			

4. 그 밖의 사항

위 동물을 잃어버린 소유자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. 다만, 「동물보호법」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보호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. 또한 「동물보호법」 제40조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「유실물법」 제12조 및 「민법」 제253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.

년 월 일

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시장
· 도지사 · 특별자치도지사 ·
시장 · 군수 · 구청장

직인